

성의 결정에 대한 기준은

보통 태어날 때 남성과 여성별로 각기 다른 성염색체를 갖는다. 그리고 각각의 성염색체에 따라서 내부의 생식기와 외부의 성기가 형성되고, 또한 일반적으로 성장과정을 통하여 심리적, 정신적인 성도 성염색체 및 내부의 생식기나 외부의 성기와 일치하므로, 성염색체로 개인의 성을 구별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간혹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적 귀속이나 성역할이 본래 성염색체로 결정된 성과 다른 경우도 있다. 어떤 개인에게 성의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 사회적 요소가 다른 경우에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성을 결정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특히 성전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에 반대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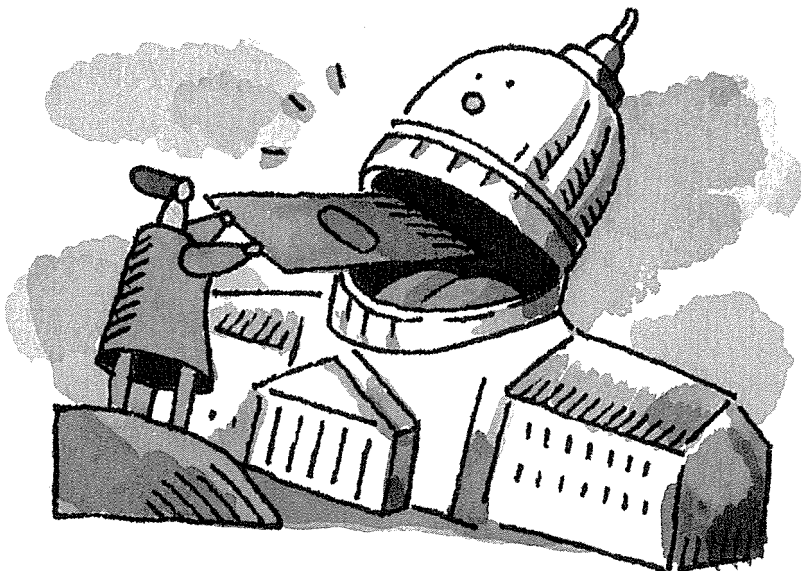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기재의 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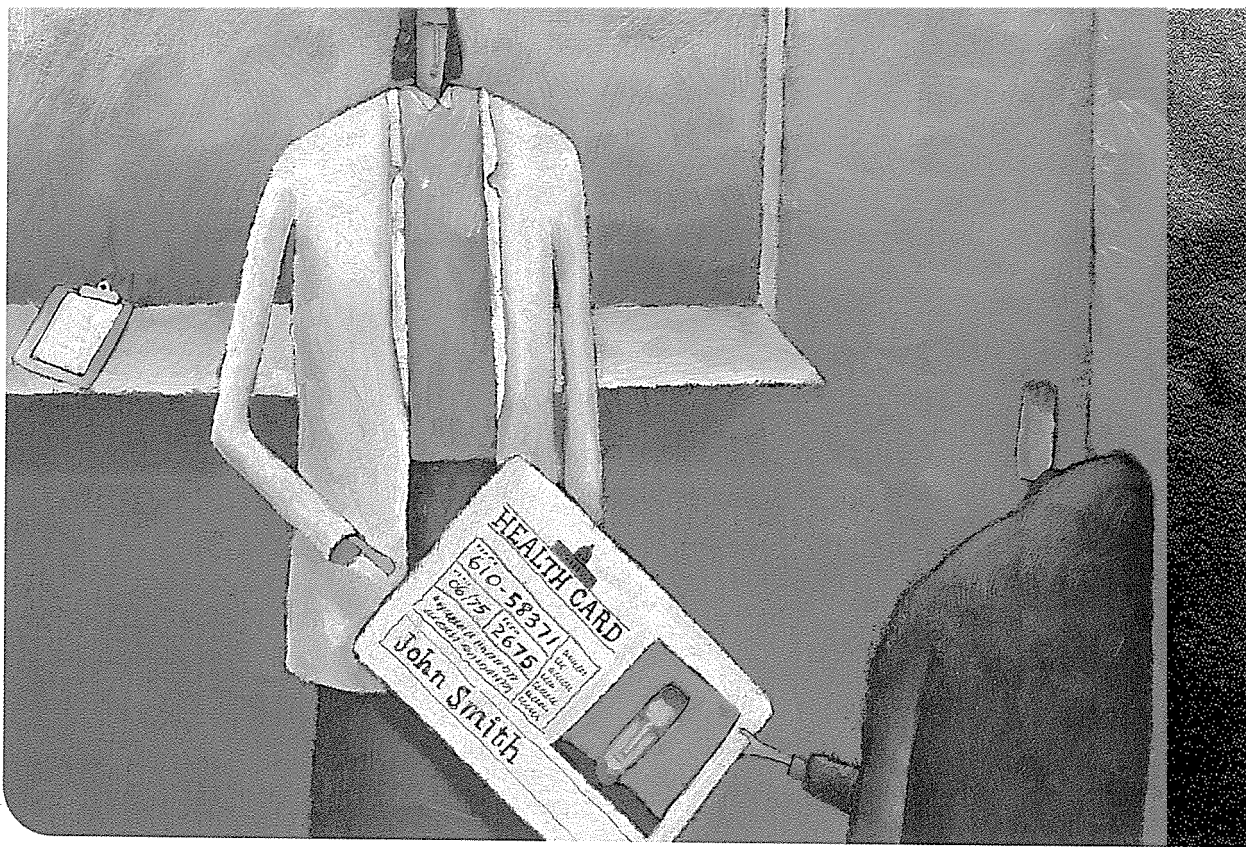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의 정정을 요구하는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미 1995년에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30대 남성이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유 없다며 기각이 된 이후, 2001년까지는 성별정정청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2002년 7월 처음 허용된 예가 있다. 그 후 지방법원을 보면 2004년에는 22건이 접수되어 10건이 허용되고, 2005년에는 접수된 26건 중 15건에서 성별정정이 허용된 경우가 있다. 그리고 드디어 금년 대법원을 통하여 “성전환자라는 사실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적의 성별란에 기재된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태도가 상당하다”는 결정을 통하여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상태이다.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性).

현재 국내에서는 법률상 남성과 여성의 구분, 즉 성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는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실 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혹은 여성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김민중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성전환자도 헌법상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한다. 또한 성전환자에게도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한다. 만약 성전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적 귀속이 달리 형성되고 수술을 통하여 다른 성기와 신체외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종래의 성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를 강제한다고 하면 성전환자의 헌법상의 기본권, 특히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심히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성전환자는 이미 반대의 성으로 생활하고 있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새로운 성의 인정은 이미 피할 수 없는 경향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어야 한다. 호적변경을 허용하여 성전환자가 주변의 별시와 신분상의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또한 전환된 성에 따라서 법률적인 지위를 누리며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결국은 입법적인 해결을.....

아직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명문으로 인정하

는 법률이 없다. 하루속히 법률상 절차규정의 미비를 보완하는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용하는 태도를 굳건히 취하고 있는 한 종래와 같은 지방법원에서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는 없으나, 호적상 성별정정의 문제를 언제까지나 판례에 맡겨둘 수는 없다고 볼 때 결국은 입법적인 해결이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출생 당시와는 다른 성으로의 변경을 허용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적 지위와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성의 변경을 위한 요건이나 효과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성전환자와 관련한 법적 관심이 호적상 성별정정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으나, 장차 성전환자와 관련한 더 다양한 법적 문제가 쏟아지리라고 본다. 예를 들어 혼인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성전환을 한 경우에 여전히 부부인가, 친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인가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장차 야기될 수 있으므로, 성전환에 따른 호적정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리 해결방법까지를 강구하여야 한다.